

|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|
| 의 안 번 호 | 제 호        |
| 의결 연월일  | 2026. 7. . |

|     |     |
|-----|-----|
| 의 결 | 사 항 |
|-----|-----|

##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(안)

|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
| 발의연월일 | 2026. 7. . |
| 발 의 자 | 김재우 의원     |

#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(안)

## (김재우 의원 발의)

발의연월일 : 2026. 7. .

발 의 자 : 김재우 의원(1인)

찬 성 자 : 김정미·김지식·신용하·  
유승헌·이상호·전희정  
의원(6인)

### 1. 주 문

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제안이유

제2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구미시의회 의사를 전달하여 시정추진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.

### 3. 주요내용

| 요구의원 | 출석일자                  | 출석대상자           | 출석장소          | 출석요구사항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김재우  | 2026. 7. 27.<br>(1일간) | 구미시장 및<br>관계공무원 | 구미시의회<br>본회의장 |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 |

### 4. 참고사항(관련법령)

가. 지방자치법 제51조

나.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51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「구미시의회 회의규칙」

제72조(시장 등의 출석요구)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·답변하여야 하며,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